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52543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31,719,361원 및 그 중 812,694원에 대하여는 2024. 6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, 29,556,498원에 대하여는 2024. 6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.7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소외 망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8. 16.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소외 망 D의 상속인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. 8. 16. 접수 제294383호로 마친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최파라

별지